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69 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임오경·한민수·부승찬

김윤덕 • 한병도 • 이기헌

진성준 · 서영교 · 한정애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.

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 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,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,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.

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·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 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"를 "교부를 받으려는 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열람 또는 등・초본의 교	제29조(열람 또는 등・초본의 교
부)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	부) ①
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<u>교부</u>	<u>교부</u>
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	를 받으려는 자는
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	
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	
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	
한다)이나 읍・면・동장 또는	
출장소장(이하 "열람 또는 등	
• 초본교부기관의 장"이라 한	
다)에게 신청할 수 있다.	
② ~ ⑪ (생 략)	② ~ ① (현행과 같음)